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2일

영 등 포 구 청 장

신청자격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양수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업체

지정업체 : 3개소

지정절차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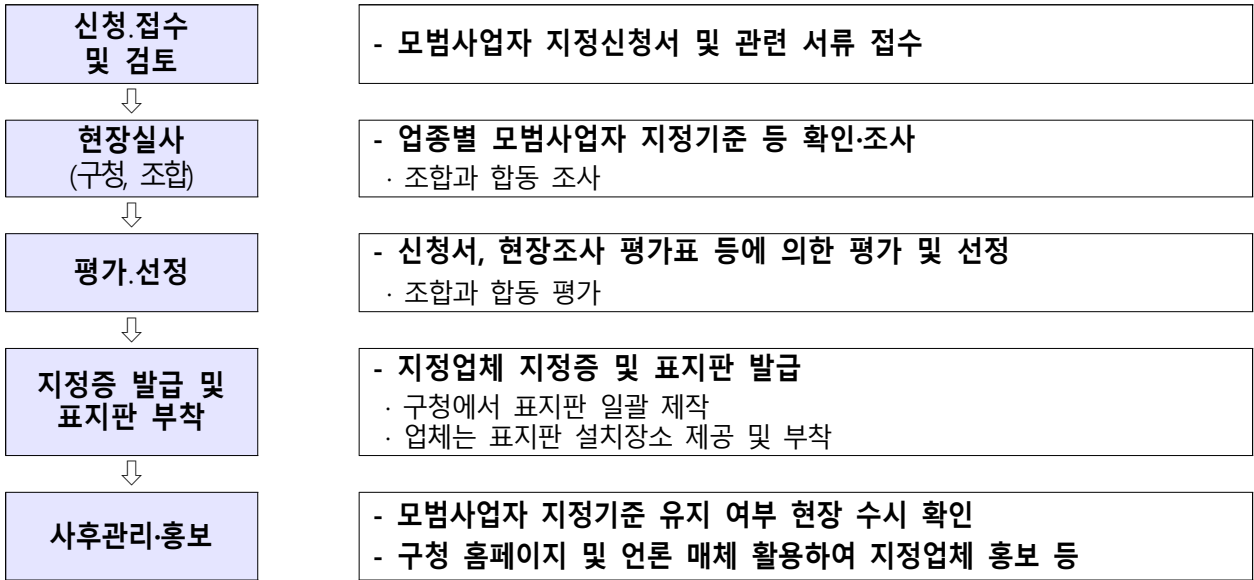


지정계획 공고



내 용

- 당해연도 모범사업자지정 계획 공고
· 지정대상, 신청방법, 지정절차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24년 11월 6일\(수요일\)](#)
- 제출처: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 제출서류

[필수]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정비책임자 등 종사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확인 증명서 사본 1부
- '고객불만 처리대장' 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결과 서류 1부
- '종사원 교육대장' 등 종사원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신고)서 사본 1부
-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Allbaro 등) 출력물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우리구 행사 또는 업무에 협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년간 신규인력 채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취업확인서 등) 1부

□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구성

- 평가단: 3인 1조(주차문화과 직원 2인, 조합 1인)
- 조합인원(전문가)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선정(조합의 사무실(국) 직원 가능)

○ 현장평가(실사) 요령

- 평가항목은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까지의 유지 관리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및 운영책임자와 현장 및 자료 확인을 통해 평가

○ 평가기준 및 지정 우선순위

- 지정 우선순위: 신청자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사업자를 지정순위표에 기재 후 우대가점을 반영한 뒤 상위 업체를 선정.
- 평가배점

구분	고객만족 등	시설 및 환경	품질인증
정비업	30	50	20
매매업	60	40	-

○ 우대가점 기준

-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자치단체장 표창업체(2점)
-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2점)
-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구 행사 또는 구민을 위한 행사 참여자(2점)
- 시·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과태료 완납 사업자(2점)

○ 기타가점 기준

- 시설 환경 및 운영 여건의 형평성 고려, 자동차제작사와 제휴하지 않은 업체는 3점 가점 부여

○ 현장평가(실사) 결과조치

- 신규업체는 평가를 통해 모범사업자 지정 순위표를 작성하여 상위 업체를 선정
- 재지정업체는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승인

□ 유의사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사업자가 신청자격 제외대상인 경우
 - 신청부터 모범사업자 지정 시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 신청업체가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년 미만인 경우(등록증 기준)
 -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등
 -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붙임 1.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2. 모범사업자 현장 확인 평가표 1부.
3.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1부. 끝.

【붙임 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재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2】

모범사업자 현장확인 평가표

1. 업체현황

상 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연 락 처	
자 동 차 관 리 사업등록번호		등 록 일 자	

2. 사전검토표

검토향목	기 준	해당여부	비 고
경영 기간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여야 함		
관계법령 위반	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제한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관리되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기타사항*			

* 주) 기타사항은 상기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기재

3-1. 현장조사 평가(정비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30)	○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2	3	4	5	우수
	○ 고객불만사항 해결 - 대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수수료·요금·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도장작업시설 등(비산 등 환경오염 방지) 여부 (집진샌딩기 미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 불량/ 집진 샌딩기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보통/ 샌딩룸 완전밀폐: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여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정화시설(작업장 오폐수 처리 가능 여부) (옥외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없음: 불량/ 옥내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있음: 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LPG 연료장치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사무실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사무실 및 작업장 정돈 미흡: 불량/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정돈 미흡: 보통/ 사무실 및 작업장 상태 양호: 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정비차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 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	불량	1	2	3	4	5	우수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20)	○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1인사업자 또는 등록 최소 인원의 경우: 보통/ 종사원의 80% 이상: 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정비용부품의 품질인증 표시 -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규격품사용여부 (품질인증제품 미사용: 불량/ 일부사용: 보통/ 전부 사용: 우수) * 자동차제작사의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교환할 경우 적용	불량	1	3	5	8	10	우수
우대사항	○							
	○							
기타사항	○							
평가총점: 점		평가자: (인)						

3-2. 현장조사 평가(매매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60)	○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3	5	8	10	우수
	○ 고객불만사항 해결 - 대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수수료·요금·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	○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	불량	1	3	5	8	10	우수
	○ 전시장 정리정돈 상태 (전시장량 전시장내 없거나 청결상태 미흡: 불량 / 전시장내 모든 차량 주차, 전시장내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	불량	1	3	5	8	10	우수
우대사항	○							
	○							
기타사항	○							
평가총점: 점		평가자: (인)						

【붙임 3】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업 체 명	평가 점수				순 위
	계	고객만족	사업자의 시설 및 환경	품질인증 우대가점	